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2) 전자우편 : jhahn0202@korea.kr
- 3) 팩스 : 02-397-73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3, 팩스 02-397-73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58호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사자등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값인 기록준위를 최저측정준위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저측정준위 이상의 선량값이 개인 기록에 포함되도록 기록준위를 변경 (고시 제9조제1항제2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2) 전자우편 : jhahn0202@korea.kr
- 3) 팩스 : 02-397-73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3, 팩스 02-397-73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83호

위성방송사업자 OBS 역외 동시재송신 승인 관련 의견 접수

위성방송사업자((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OBS방송을 역외 동시재송신하기 위해 승인 신청한 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시행령 제61조제5항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 신청 현황

신청 주체 (위성방송사업자)	재송신 대상 지상파방송	재송신 방송구역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OBS-DTV (방송구역 : 인천, 경기 일원)	서울특별시 전역

2. 의견제출기간 : '20. 10. 15.(목) ~ '20. 10. 28.(수) [14일간]

3. 제출의견

- 방송매체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 관련
- 시청자의 권익 보장 관련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관련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관련
-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공익성·다양성 관련
- 재송신에 필요한 기술적 안정성에 대한 사항 관련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위성방송사업자 역외 재송신 승인 업무 담당자 앞
- 팩스 : 044-202-6038
- 전자우편 : jhpnara@korea.kr

5. 기 타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84호

관보 제19847호(정호)(2020.9.29.)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569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재공고 예정으로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